

연구비 자체감사 내규

제정일 : 2007.09.01

개정일 : 2010.05.11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단” 이라 한다) 정관시행세칙 제 6 장 내부감사에 의거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행정체계의 확립과 합리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서 연구비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사범위)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회계감사 및 연구관리와 관련된 포괄적 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감사의 종류) 연구비 감사는 상시자체감사와 특별자체감사, 위탁과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상시자체감사는 감사팀에 의한 연구비 집행의 예방적· 일상적 내부 상시감사
2. 특별자체감사는 산학협력단의 필요 또는 제보자의 요구에 의한 감사, 자체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3. 위탁과제감사는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위탁을 수행한 기관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제 4 조 (감사기관) ① 상시자체감사와 위탁과제감사의 연구비 감사는 감사팀이 담당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자체감사를 위하여 산학단 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체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자체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감사방법) ① 상시자체감사 실시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의 대금 지불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을 사전에 예방한다. 감사 대상 항목은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상시자체감사의 연구비 감사는 연구책임자가 집행한 각종 카드결제 내역 및 계좌이체요구서 등을 과제종료 1개월 이내에 체크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즉시 회수처리 한다.

③ 특별자체감사의 연구비 감사는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모든 위탁과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은 사용실적 보고일 30일 이전에 해당위탁과제의 사용실적보고서, 집행 증빙 사본 및 위탁기관의 연구비 관리 내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과제 감사 후 부적정집행사례에 대하여 조치하고 이에 대한 시정사항을 확인한다. 단 위탁기관이 인증기관이거나 해외기관인 경우는 증빙사본 및 연구비관리내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의 중대한 위반사례에 대한 사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제 6 조 (세칙) ①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5조의 제4항)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5조의 제1항)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